

국제선편우편 탈락품 공고

2017년 1월 부산국제우체국에서 우편물 취급 중 발견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선편우편물의 탈락 우편물을 국제우편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 제시 기간 내에 교부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건 수 : 3건(목록 별첨)
- 공 고 기 간 : 2017. 2. 7. ~ 2017. 3. 6.(1개월간)
- 교부청구기간 : 2017. 2. 7. ~ 2017. 5. 6.(3개월간)
- 관련문의부서 : 부산국제우체국 지원운용과
(☎ 055-371-0171)

상기 교부 청구기간 내 청구가 없는 탈락품은 우편법 제36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8조, 제39조에 의거 보관기간 경과시점인 2017년 5월 7일 이후 폐기 또는 유가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(유가물로 판정된 탈락품은 해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됨)

2017. 2. 7.

부 산 국 제 우 체 국 장